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19 선고 2022가합102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상천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담당변호사 정하용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변론 종결 2023. 4. 7.

판결 선고 2023. 5. 1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⑤항 '매매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②항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④항 '매매계약성립일'란 기재 각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시가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 내지 6 및 피고 18, 피고 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7. H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을 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7. H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8, 19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원고의 피고 1 내지 6(B,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천시 AD 외 7필지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별지2 목록 ②항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 사실, 위 피고들은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2. 3. 7. 위 피고들에게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서면 회답을 최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피고 B, C, D, E, F는 2022. 3. 8.경, 피고 G은 2022. 3. 10.경 이 사건 최고서를 각 송달받은 사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22. 6. 30.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분은 별지2 목록 ④항 기재 각 매매계약 성립일에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위 각 송달일에 근접한 2022. 7. 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피고들의 각 지분별 시가는 별지2 목록 ⑤항 기재 각 매매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별지2 목록 ④항 기재 각 매매계약 성립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위 피고들의 각 지분별 시가인 별지2 목록 ⑤항 기재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②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④항 '매매계약성립일'란 기재 각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우창

판사김지영

판사곽여산

별지